

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23.03.30]
(일부개정) 2023.03.30 규칙 제586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문화체육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204-1141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허가) ①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9.27>

1.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4일 사이 신청 <개정 2023.3.30>
 2. 조례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조례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0일 사이 신청 <개정 2023.3.30>
-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9.27>
- ③ 사용자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변경신고서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군수는 변경신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9.27, 2023.3.30>
- ④ 사용자가 우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. <개정 2012.9.27>

제3조(사용료의 납부) 사용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30>

제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소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확인으로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2.9.27, 2014.6.26>

② 삭제 <2014.6.26>

제5조(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)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12.9.27>

1.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
2. 위탁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공고)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·위치·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9.27>

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신청 등)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비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<개정 2023.3.30>
 2. 사업계획서 1부
 3.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<개정 2023.3.30>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·정리하여 위원회에 상정·심의하게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선정한 후 통지한다.

제8조(관리·운영 계약)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받은 체육시설 세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가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·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군수는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로부터 20일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다.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2.9.27>

제9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위탁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·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위탁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관련 서류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9.27>

제10조(위탁의 취소) ①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관계 법령, 조례, 규칙이 정하는 사항 및 군수와 체결한 계약 준수

2.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확보

3.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시 원상 복구

②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규정) 수탁자는 수탁받은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세부 운영 규정을 만들 수 있다.<신설 2023.3.30>

부칙 <2007.12.27 규칙 제28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3.11 규칙 제329호> (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9.27 규칙 제37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, 허가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2014.6.26 규칙 제39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3.30 규칙 제58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

사용 신청, 허가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체육시설 사용 허가서			
신청자	성 명		
	단 체 명	(연락처)	
	주 소		
사용허가 시설	시 설 명		
	목 적		
	사용일시		
	참가인원		
사용허가 부대시설			
사용료	구 분	금 액	산출 근거
	체육시설		
	부대시설		
	기 타		
<p>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.</p> <p>※ 허가조건 : 이면과 같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직인</p>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(허가서 이면)

허가 조건

1.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한다.
2. 시설물 및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한다.
3. 장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4. 행사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행사 주최 측에서 행사종료 즉시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.
5. 체육시설 내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취사행위를 하지 못한다.
6. 허가기간 중이라도 국가·지방자치단체 행사시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7. 체육시설 내에 무대, 천막, 광고물 등 기타 시설물을 설치 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.
8.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